

“총무보사위원회”의안심사보고

제출일자 : 1996년 12월 24일

제 출 자 : 제8회 파주시의회 정기회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 김준수

1.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6년 12월 18일 (파주시장)

나. 회부일자 : 1996년 12월 21일

다. 상정일자 : 1996년 12월 21일 【제8회 파주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상정, 제안설명

1996년 12월 23일 【제8회 파주시의회 정기회 제5차 총무보사
위원회】 상정, 검토보고, 질의·답변

1996년 12월 24일 【제8회 파주시의회 정기회 제6차 총무보사
위원회】 의 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총무국장 권혁준)

가. 제안이유

- 파주시 농촌지도소의 국가직 정원이 지방직화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직속기관 _____ 53명 증
 - 지도관 : 4명(소장 1, 과장 3)
 - 지도사 : 49명(농촌지도사 44, 생활지도사 5)

3.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전문위원 : 홍덕기)

- 지방공무원법 제4조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지방지도직 직급이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4. 질의·답변요지

질)지방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국·과·소간 인원조정도 가능한지?

답)직렬 조정은 총정원 범위내에서 가능하며 차후 인력진단시 조정필요가 발생할 경우 조정할 것임.

질)재정이 부진한 실정에서 인건비 충당은?

답)지방양여금으로 충당됨.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경과 : 집행기관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